#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서	기관의장
람	



제 564호 2016. 8. 18(목)

고 시 제2016 - 57호 제2016 - 59호 제2016 - 60호 제2016 - 61호 제2016 - 6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공 고 제2016 - 580호 제2016 - 590호 제2016 - 591호 제2016 - 592호 제2016 - 595호 제2016 - 596호 제2016 - 598호 제2016 - 605호 제2016 - 606호 제2016 - 607호 제2016 - 613호 제2016 - 615호 제2016 - 615호 제2016 - 624호 제2016 - 628호 제2016 - 630호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공고 … 15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3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7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7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65 도선(조도호)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 74 남해군 주차장조례안 입법예고 … 77 남해군 주차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93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1 군관리계획(체육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 107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7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123 공시송달 공고 … 139 공시송달 공고 … 139
알림보건소 공고 제20보건소 공고 제20농업기술센터 공고농업기술센터 공고체육시설사업소 공고회 람발 행 : 남 해 군	입법에고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6 - 57호

##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 남 해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피허가	자	허 가	면 적	코 스 코 ›	과 수 ㅁ 과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번 호	(m²)	점용장소	점용목적	당 초	변경
서면 작장 ***	강○현	2011-12	100	서면 작장리 1465-5번지 지선	육성양이장 해수유입 송수관설치	2016.2.28 2016.10.31	2016.2.28 2021.2.27

남해군 고시 제2016 - 59호

## 공유수면 점용 사용 협의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 남 해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허가	허 가	점용사용의 목적	점용사용의 장소	점 <mark>용시용</mark> 의 면적	점 <del>용</del> 사용	점용사용 허기	가를 받은 자
번 호	년월일	48484 54	48484 82	m²	기 간	주 소	성 명
2016-1	2016. 7.25	사방사업 (해안침식방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541번지	512.0m²	2043.7.24.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경상남도산림 환경연구원

남해군 고시 제2016 - 60호

##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고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 및「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 남 해 군 수

1. 낚시통제구역 지정 현황 : 5개소 (위치도 : 붙임)

낚시통제구역 명칭	위 치	면적(m²)
대량 낚시통제구역 (상주면)	① 대량방파제 ② 구 대량분교 아래쪽 갯바위 주변	길이 : 약550m 면적 : 약4,800㎡
미조남항 낚시통제구역 (미조면)	① 미조남항 동편방파제 및 해안도로변의 TTP구역(중간부 갯바위 포함) ② 미조남항 서편 방파제	길이 : 약1,200m 면적 : 약13,600㎡
항도 낚시통제구역 (미조면)	항도방파제 및 갯바위 주변	길이 : 약450m 면적 : 약8,500㎡
항촌 낚시통제구역 (남면)	항촌방파제 주변	길이 : 약150m 면적 : 약2,600㎡
홍현-가천 낚시통제구역 (남면)	홍현마을~가천마을로 연결되는 갯바위 주변	길이 : 약3,500m 면적 : 약79,000㎡

- 2. 낚시통제구역 지정사유 :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보호 등
- 3.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 2016년 8월 1일부터 ~ 해제 시까지

4. 낚시통제구역 지정일 : 2016년 7월 27일

5. 낚시통제구역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가. 근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55조제1항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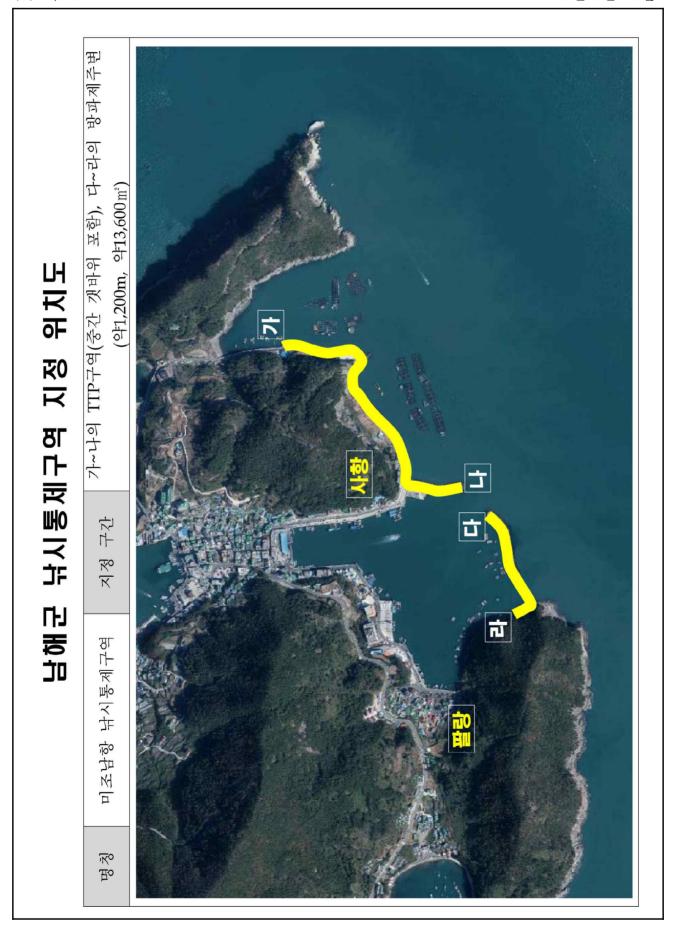
나. 벌칙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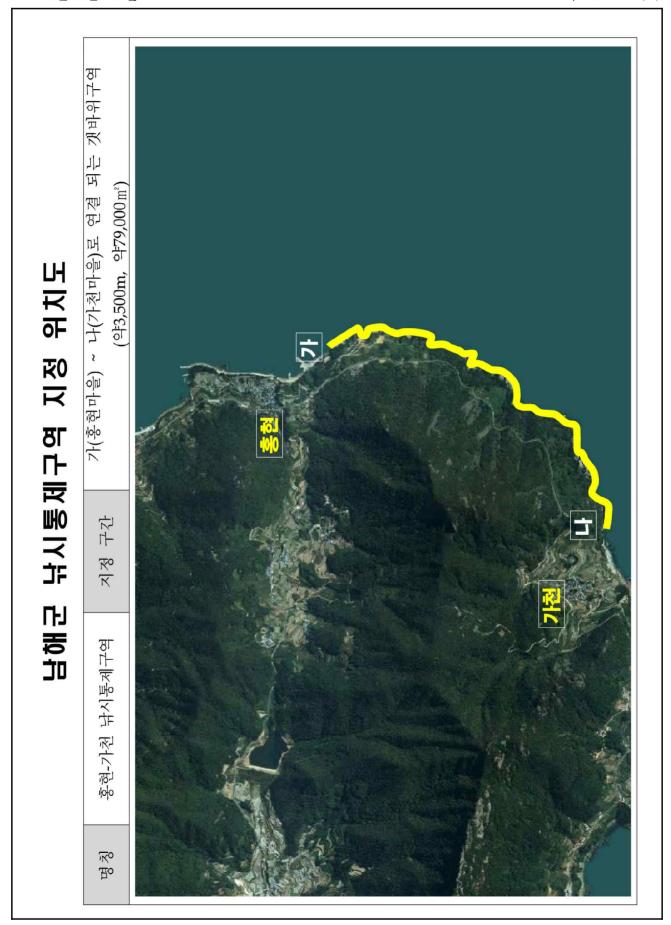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고시 제2016 - 61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화천)

2. 성 명:김○자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

4. 점용목적 : 진입로

5. 점용위치 :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089-4, 1088-1

6. 점용면적 : 25 m²

7. 점용기간 : 2016. 07. 20. ~ 2016. 12. 31.

남해군 고시 제2016 - 63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18 외 26

종전-	주소	도로	길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그	쿠여사유
(별도열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	.로명주소	변경후 도	로명주소	도로명주	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도열람)						
<b>도</b> 遠	로명주소		도로명주	소 폐지일		폐지사	<del>ò</del>
	 (별도열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4.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1	총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시유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231-2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18	20090427	독일에 파견되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독일거주교포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독일마을이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889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213번질 40-28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535-17, 530-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111번길 95	20090427	남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이산리 41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48	20090427	남해읍에서 남해의 제2산이라 불리는 망운산으로 통하는 길임을 반영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388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310번질 24-5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3-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53-2	20090427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조성되는 녹색테마파크로 이어지는 길임을 반영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남양리 727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창남로284번질 27-20	20090427	창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943-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276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기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943-8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274	20090427	남편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기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186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고설로 164-29	20090427	고현면(옛날이 현이 있던 고을)과 설천면을 잇는 도로임을 반영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094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1567번질 7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614-4	경상남도 남해군 참선면 서부로 481~4	20090427	충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리 산96-2, 1028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855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편,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경상남도 남해군 참선면 진동리 74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1320번길 58-24	20090427	흥선로의 시작자점에서부터 약 13,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산12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로 10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섬의 모양이 밤같이 생긴 데에서 유례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1290-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로 25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마을 인근이 초원이었음을 의미함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1113-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682-12	20090427	충선면의 서쪽해인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705-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205번길 11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17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594-6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237-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810-8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407, 408-3, 408, 407-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853-5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410-5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400-38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64-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2843번길 7-6	20091023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이산리 56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나길 14-24	20100915	망운로21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기가 그 나라고 남해을 서변의 263~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번질 48-10	20100915	마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1 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
폐지사유	현장확인 결과 실존하지 않는 건물	현장확인 결과 실존하지 않는 건물
도로명주소 폐지일	20160712	20160712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111번길 9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111번길 95
중전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535-1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535-11
	-	2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6 - 580호

# 남해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공고

남해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 남 해 군 수

#### 가.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 사업위치 :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308-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전기공급설비 A=58,000㎡, 진입도로 L=1.79km, B=4m

- 주요내용: 게재는 생략하며, 도시건축과에 비치된 관련서류 참조

#### 나.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6. 08. 11(목) 14:00

- 장 소 : 남해군 삼동면 봉화마을회관

다. 공청회의 주민 의견진술자 추천

법적근거	추천기한	추천방법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2016년 8월 4(목) 18:00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남해군청 도시건축과로
중합 시행비적 제4호제2행	10.007[^]	직접 또는 우편 접수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6 - 590호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2.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자치 법규간 서로 상이한 부분을 반영하고 국가 기관간 상호 협업을 통한 표준조례안 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1차례만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함
- 제24조: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대부계약해지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함
-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외국 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기업)
- 제26조 제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지 역지정권은 시·도지사에게만 있어 해당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 하는 부분 삭제함
- 제61조 제2항: 은닉 공유재산을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고하는 순서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해당 조항 삭제

- 제62조: 법규성 없는 질의회신 등의 조례준용 규정 삭제

#### 4.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⑤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153, 팩스 860-3705, e-mail : syseo74@korea.kr

	의 견 제 출 서						
1. 자치	법 규 명						
2. 의견 성명(명칭)					전 화 번 호		
제출자	주 소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성	반대		,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지하고"를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로 한다.

제25조 중 "을 준용한다"를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기업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26조제4호 중 "도지사 또는 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을 "대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다.

제29조제4항 중 "되는 감정평가기관의"를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로 한다. 제6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조의2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u>&lt;삭 제&gt;</u>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 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u>해지하고</u>	<u></u>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나 해제할 수 있고,</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 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 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 기업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국 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영 제29조제1항제7호, 제38조 제1항제25호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 ·매각하거나 대부료 감면이 가능한 공 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등)————————————————————————————————————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u>도지사 또는 군수</u> 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 역의 공유재산	4

#### 5. · 6. (생략)

-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u>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u>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채취물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채취물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취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u>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u> 한다.
  - ③ (생 략)
-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 거가 <u>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u>, 관 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생략)
- 제6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 략)
- ②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이 등기 등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신고 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 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 ③ · ④ (생 략)
- 제62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삭 제>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5.・6. (현행과 같음)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대부한
②
·································
시가적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
조제2항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4)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u> </u>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남해군 공고 제2016 - 591호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2. 개정이유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미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제13조 제2항: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및 공유재산사용료·매각대금·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을 추가함
- 제18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8조 등에 따라 기존 감정 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까지 감정평가 의뢰대상 확대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li>○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li> <li>○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li> <li>○ 기타 참고사항 등</li> <li>나. 의견 제출처</li> <li>○ 주소: ②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li> </ul>
○ 우조· ♥32425, 함에는 함에함 중문모9단을 12 함에는중 제구되 ○ 연락처 : 전화 055-860-3153, 팩스 860-3705, e-mail : syseo74@korea.kr

의 견 제 출 서										
1. 자치	법 규 명									
2. 의견	성명(명칭)				전화번호					
제출자	주 소			·						
자치법-	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 , ,			반대		<u>'</u>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해군"을 "「남해군"으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의"를 "남해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외의 군유재산 : 재무과장

제2조제3항 중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를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소관에"를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에"를 "소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소관재산"을 "소관 재산"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 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직 성명"을 "직·성명"으로 한다.

제6조 중 "개소"를 "장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고 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1조 중 "제61조"를 "(이하 "조례"라 한다)제61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부채납"을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 사용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변경 내용"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매각신청)"을 "(매각신청 및 분할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및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
- 2. 공유재산 사용료·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30호서식) 제14조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것이 있을"을 "필요할"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호에 의"를 "호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취득 및 처분등"을 "취득 및 처분 등"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등기수속등)"을 "(등기수속 등)"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중

"받아야"를 "거쳐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등록"을 "등기·등록"으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소 및 직속기관"을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등기부등본
- 3. 도면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8조 중 "제22조"를 "제36조"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을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 처리하여야"로 한다.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 의견서 및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를 "대한 의견서"로, "각호과"를 "각 호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 및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9호 및 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个						ਲ									
		炎						전									
	뜐기	晋					Z T	년 월 일									
		Д	<b>├</b>	Hr.	묘		10	지급									
				m,	m²		여	ন্ত									
六	77							01									
五			_	承	↓			Ľп									
숙	про	펀		전체	차수												
〒		なる日下	나		之 必		11 0	п ф									
本	计	성			녀		上 へ へ	<b>⊢</b>									
,,,			m²	m²					2n	설리	2u	2 <sub>II</sub>	설리	열	<u> 연</u> 미	2u	2n
							7 17		如	部	જ	જ	જ	部	જ	જ	જ
							えたコ	<b>⊢</b>	고기	과	고기	고기	귉	고기	고기	과	꼬기
									文	六	六	六	坟	坟	六	六	英
			면정	면정			5	נת	2ŋ	일	일	일	일	일	일	양	<u></u> 2마
			冷日子	차수면적			ক	TŲ.	9ħ	部	જ	જ	જા	જ	જ	જ	જ
~ -		머디		₹r		· 영 교	계아기	년 - -	五八	고기	٦٦	শ্র	ΣΊ	ম্র	고기	五八	ᠴᠠ
8호 사		K		K		주소. 성											
를 지 제{	· 전		Щ	K		소유자 주	전	r									
(현행)[별지 제8호 서식]	<b>&lt;</b> 4		<b>√</b> ⊢	叫口	것	<b>4</b>	ドイ	<b>⊢</b>									

	수광					여							
4	る。				ďī	일							
	파	<b>성</b> F	叫口		는 그	지급년월							
石		m²	m,		여	좡							
						Цп							
대 하		K4 ,	吗。		T,	п							
다	ਨ ਨ		叫口		0 1/2 0	4							
	•	m² m²			0] 3] 7] 7]	# 시 시 신							
	7	총 면 석 임차면적			[0]	מ							
	저	天		. 성명	Al OF LA	<u>E</u>							
소제지				소유자 주소	小江日五								
	지 관 음	재지 지목 지목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재 지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지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시설   1	지 부	지 부	지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지 자 전	지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현행)[별지 제10호서식]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안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도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혐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도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 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도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도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용어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군의 해석에 따른다.

#### (개정안)[별지 제10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안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 군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 할 수 없다.
-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도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 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도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도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본 군에 제출하여 야한다.
- 제19조(용어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군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29호시	러식]
1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지원이	성 명				주민등	루번호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 면적	9 -	-	대부자	비고				
소 재 지			지목	지적(m²)	(m²)	용도		네구스	1 11/2
				I .	I	1			1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동의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8항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감정가 고액 등)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남해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별지 제30호서식]

공 유 재 산 [ <sup>(</sup> )사용료( )매각대금 ] 분 할 납 부 신 청 서										
וא בו או	성 명		주민등록번호	민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		신	청	시처				
소 재 지		지목	지적 (m²)	신 <sup>2</sup> 면 <sup>2</sup> (m²	현 역 사유 )		분납방법	비고		
							년/월			
							회 분납			
							년/월			
							회 분납			
							년/월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

위 재산의 [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을(를)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

월 일 년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회 분납 년/월 회 분납

남해군수 귀하

구비	서류
없	음

수 수 료 없 음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남해군</u> 공유재산 관리 <u>조례(이하 "조례"라 한다)</u> 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                             </u>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u>군의</u> 공유재산(이하 "군 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 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 이 총괄한다.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u>남해군의</u>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업무 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외의 군유재산 : <u>재무과장</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 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 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u>또는 용도변경</u> •용도폐자 — .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 총괄) ① (생 략)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 총괄) ① (현행과 같음)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 에게 그 소관에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 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 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② —— <u> </u> —— <u> </u> —————————————————————————

<u>소관에</u>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디
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겨
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4조(관리책임) ① ~ ③ (생 략)

④ 재산관리관은 <u>소관재산</u>이 실제와 등 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 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⑤ • ⑥ (생 략)

-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u>제4조</u> <u>제2항</u>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생 략)
-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
  - 3. · 4. (생략)
-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u>개소</u>에는 썩거나 부식되 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생 략)

-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 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른다.

끄
④·⑤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소관 재산</u> ———
⑤·⑥ (현행과 같음)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u>제4조</u>
제항
<b></b> .
1. (현행과 같음)
2 ———
<u>직·성명</u>
3. · 4. (현행과 같음)
제6조(경계선) ———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2)————————————————————————————————————
型—————————————————————————————————————
역야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 급) —————(이하"
조례'라 한다)제(il조
•

제12조(기부채납) ① (생 략)

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 가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생 략)

<신 설>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생 략)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현행과

-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교환)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 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 6. (생략)

제18조(가격평정) ① (생 략)

-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 야 하다.
- 제1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 수는 제2호의 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제12조(기부채납) ① (현행과 같음)

결정 및 무상 사용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변경 내용--.

제13조(매각신청 및 분할납부 등) ① (현행 과 같음)

- ②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및 분할납부 신청 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29호서 식)
- 2. 공유재산 사용료·매각대금·대부료 · 변상금 ·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30호서 식)

같음)

2		 	별지
제20호서	<u>식</u>		
제16조(교환	) ————	 	
		 <u></u>	요할

1. ~ 6. (현행과 같음)

제18조(가격평정) ① (현행과 같음)

2	
	- <u>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u>
제19조(인계인수) —	

----- 호의 -

----- 공유재산 -

있다.

1. ~ 3. (생략)

제2장 취득 및 처분등

- 제20조(등기수속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 였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 에 필요한 절차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u>등기등록</u>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u>공유재산관리대장</u>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제21조(매수신청) ① <u>실·과·소 및 직속</u> <u>기관</u>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u>각호의</u>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 8. (생략)
  - ② (생 략)
-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 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다음 <u>각호의</u> 사항을 갖추어 군 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 1. (생 략)
  - 2. 등기부 등본
  - 3. 도 면
  - 4.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장 취득 및 처분 등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u>거쳐야</u>
② <u>등기·등</u>
<u> </u> 공유재산 관리대장
1. ~ 4. (현행과 같음)
제21조(매수신청) ① <u>실·과·단 및 직속</u>
<u> 기관 시업소</u> 각 호의
<u>~                                    </u>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del></del>
حراا
<u> </u>
1. ~ 5. (현행과 같음)
2
<del></del>
1. (현행과 같음)
2. 등기부등본
3. 도면

4. (현행과 같음)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제28조(대부 계약) 조례 <u>제22조</u> 에 따른 일 반재산의 대부 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 식에 따른다.	제28조(대부 계약) <u>제36조</u> 
제28조의2 <u>(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u> ①· ② (생 략)	제28조의2(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생 략)	제29조 <u>(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u>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 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 
수 오기 시항 <u> 섬모이역</u> 다 인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u>각호과</u> 같다.

1. • 2. (생략)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15-3 <삭 제> <u>호 서식)</u>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한 의견서 및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u>각 호과</u> ----.

1. • 2. (현행과 같음)

----- 대한 의견**서** 

		个					여									
		べ。					স্থা									
	변기	否				Z TI	년월일									
		叫	- 석г	描		1111	지금나									
	교		~H	, U		여	智									
☆																
수	(대 파		· 첫	4			Цп									
〒		사 건	ι <del>-</del> κι	다 평		ц	д									
<b>举</b>	뉴	상		ᆄ		よっくい	<u>}</u>									
)K			m m²					인비	일	<u>থ্</u> য	양	양	일	인리	<u>의</u>	2미
						1/2	1 4	જ	જા	જ	જ	ớ	ớ	ớ	ớ	ớ
						よんし	<b>├</b>	고기	퐈	과	과	과	과	고기	과	꼬기
								일차	일차	일차	일차	일차	일차	일차	일차	일 각
			총면 적 차수면적			୍ଦ ବ		如	જ	ঞা	જ	學	જ	ঞা	ঞা	প্রমা
사 식 <u>]</u>		자	 7		장 연		세국건별	푀	권	뀜	된	귉	년	দ্র	뀜	고기
(현행)[별지 제8호 서식]	<b>を</b>	* 7		≺	소유자 주소. 생	ж Ц	ļ۲									
(현행)[독	4	长	<b>√</b>  - 1	きりび	<b>ं</b> न		<b>├</b>									

		个。哈						ਲ									
		і <u>К</u> о						স্থ									
	뜐	呼					TI ITI	년월일									
		Д	<b>├</b> ^	선F	叫口		Цп	기타									
	77			m	m		여	장									
<b>☆</b> ∘																	
수표	oja 7	단	-	전체	임차			Цп									
〒		<b>사</b> 이 다	구 주		평		П	п									
文	다	섯			ᆔ		0 7 0	4									
[o			m²	$\mathbb{m}^2$					ল	등	(일	<u>থা</u>	তা	তা	티	일	<u></u> 일미
							7 17	٦,	ớ	જા	જ	જ	邻	邻	જા	જ	જ
							ار ابر آب	T T	꼬기	과	퐈	퐈	퐈	퐈	퐈	퐈	포기
									浡	착	本	六	六	六	六	本	本
			전.	H 전			5	ni l	일	일	<u></u>	유	음	일	양	딍	듼
			* 品	임차면적			0	m)	2या	প্রা	설비	剑加	剑	প্রা	প্রা	如	<u>S</u> un
·호 사식]		고		K K		주 연 연	الله الله	L L	רב	된	ኒያ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五기
(개정안)[별지 제8호 서식]	제 지		叫	K	-	소유자 주소.	7 1	Γ									
(개정안)	<b>≺</b> 4	бп	Ķ	다	r V	<u>수</u>	0 4										

#### (현행)[별지 제10호서식]

#### 허가조건

-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안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도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혐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 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도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 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도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도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용어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군의 해석에 따른다.

#### (개정안) [별지 제10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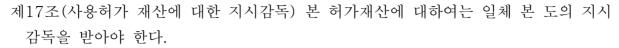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안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 군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 할 수 없다.
-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도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 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도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18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본 군에 제출하여 야한다.
- 제19조(용어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군의 해석에 따른다.

남해군 공고 제2016 - 592호

#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2. 개정이유

남해군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제2조 제1항 : 물품사무관리자 지정 대상 명확화
  - 제16조 : 불용결정 위임처리 대상 명확화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4.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8)	제 564 호	2016년 8월 18일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⑨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 ○ 연락처 : 전화 055-860-3153, 팩스 860-3705, e-mail : sysec	

의 견 제 출 서							
1. 자치	법 규 명						
2. 의견	성명(명칭)				전화번호		
제출자	주 소						
   자치법 <sup>-</sup>	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규칙 제 호

#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 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본청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 업무 팀장

물품운용관 - 각 실·과·단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단 물품업무 담당자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사"를 "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의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 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자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본청에 있어서는군수가, 사업소에 있어서는 사업장"을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각 관서 및 의회에서는 각각그 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 다"로 한다.

제4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날인함으로써행한다"를 "날인함으로써 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를 "따른 도서 대출대장에 따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청구 및 출급증에의거"를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입증기, 기타에 대하여"를 "수입증기 등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를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물품중"을 "물품 중"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의한"을 "따른"으로, "물품관리관에게즉시"를 "물품관리관에게 즉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1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처리한다"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하지"를 "필요로 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청 또는 청·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본청 또는 각 관서, 의회의 소속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의장, 읍면장"을 "직속기관·사업소의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속기관, 사업소, 읍 • 면, 의회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에 따른"으로,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0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생략)

# 신・구조문대비표

행 개 정 안 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물품관리 제조(목적) —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u>조례 제</u>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u>「남해</u>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 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 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1. 본청 1. 본청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경리담당 주사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 업무 팀장 물품운용관 - 각 실·과·단장 분임물품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출납원 - 각 실·과·단 물품업무 담당자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물품업무 담당 자 (담당이 없는 실과는 주무자) 2. ----2. 직속기관 ~ (생 략) ~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의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물품출납 원 - 주무담당 팀장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 │ ②제항─── 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 군수가, 사업소에 있어서는 사업장이 이를 가, 각 관서 및 의회에서는 각각 그 관서 지정할 수 있다. 의 장----.

~ (현행과 같음)

)16년 8월 18일 H 해 근	<b>군 공 보</b> 제 564 호 (53)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u>제</u> 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 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u>의</u> 한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u>제8</u> 조에 따른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u>제11조의 규</u> <u>정에 의한</u>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 지 제2호서식에 <u>의한다</u> .	제4조(기증품 조서 등) <u>제11조에 따</u> 른 <u>따른다</u> .
제5조(불용결정 통지서) 조례 <u>제16조의 규</u> <u>정에 의한</u>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 호서식에 <u>의한다</u> .	제5조(불용결정 통지서) <u>제16조에 따</u> 른 <u>따른다</u> .
제6조(불용품 폐기 조서) 조례 <u>제18조의</u> <u>규정에 의한</u>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u>의한다</u> .	제6조(불용품 폐기 조서) <u>제18조에 따</u> 른 <u>따른다</u> .
제8조(출납명령) ①・② (생 략)	제8조(출납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u>의한</u> 청구 및 출급증에 <u>날인함으로</u> <u>써행한다</u> .	③ ——— 따른 ——— <u>날인함으로써</u> <u>행한다</u>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u>의한 도</u> <u>서대출대장에 의하여</u> 주관과장의 결재를 <u>얻어야</u> 한다.	⑤ ————————————————————————————————————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u>청구 및 출급증에의</u> 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한다.	⑥ <u>청구 및 출급중에 따</u> 라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	제10조(물품의 청구)

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

급증에 <u>의하여</u>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
리관에게 청구하	여야 한다.		
12조(소모품의 3	교부) ① 성	사 소	모하는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u>수입증기, 기타에 대하여</u>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 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u>대하여</u>는 별 지 제10호서식에 <u>의한</u>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u>물품관리관에게즉</u> 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 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u>의하여</u>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 ④ (생 략)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 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u>당해</u>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del></del>
1,220(000)	
	입증기 등에 대해서
②	따른 우
9	
제13조(물품의 반납) ①	
물품 중	
	다하사
<u> </u>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2	
	<u>.</u>
③·④ (현행과 같음)	
<u> </u>	
<u> </u>	·····
——— <u>咤</u> ——	
<u> 따라</u>	
·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	
<u> </u>	
	 제6조에
따라	<u>/\lитэll</u>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전환이 합 의되었을 때에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 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에 의거 인수인계 한다.
-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처 리한다.
-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 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 1. · 2. (생략)
- 3. 공유재산관이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 을 요하는 물품
- •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1. (생 략)
  - 2. 청·소·읍·면

(생 략)

(생 략)

(생 략)

- 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6. (생략)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 제28조에 따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

② 제1항에 따라
따라
③
<u>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u> 힌
<u>다</u> .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u>필요로 하지</u>
1. • 2. (현행과 같음)
3
U
<u>필요로 하는</u>
레10코(H O A) 커키) H 티 ㅠㄴ 키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청 | 제16조(불용의 결정) ----- 본청 또는 각 관서, 의회의 소속직원에게 다음 각 호 에 따라 ----

- 1. (현행과 같음)
- 2.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의회

(혂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 |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 제24 조에 따른 -----호----.
  - 1. ~ 6. (현행과 같음)

(56) 제 564 호	날 해 교	<u>-</u> 공 보 		2016년 8월	18일
호서식에 <u>의하고 조례 제29조의한</u>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의 의한다.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u>규정에 의한</u> 물품출납원 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u>의한다</u>	20호서식에 <u>제32조의</u> 무인계보고	<u>따른다</u> . 제20조(물품재 른 ———	- <u>따르고 조례</u> 고조사 등)	제32조에	_

남해군 공고 제2016 - 595호

#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남해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7월 28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을 적용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표 주안에 따라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라.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마.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6조)
  - 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사.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안 제8조)
  - 아.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0조)
  - 차. 보칙 (안 제11조 내지 제18조)

####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 및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수(참조 재무과장)

- 전화: 055-860-3173, FAX 055-860-370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 부과팀(전화055-860-31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자치	법 규 명						
2. 의견	성명(명칭)				전화번호		
제출자	주 소			·			
   자치법-	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 , ,		찬성	반대		<u>'</u>	<u>_</u>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남해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감면

-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2조의2(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제79조제2항에서 규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2년간 면제한다.
-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5
  -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 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하다.
-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 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 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 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 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 제3장 보칙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다.
-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 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 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해군 공고 제2016 - 596호

#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 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5. 12. 29.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안 제11조 제3항)
- 나. 장사시설 사용기간(안 제15조, 제17조)
- 다. 관리비 징수(안 제6조 별표 2)

#### 4.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 우 52419,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 연락처 : 전화 055-860-3852, 팩스 860-3882, e-mail : leechk8879@ korea.kr
- 5. 그 밖의 사항

남해군 주민복지실 선진장사팀(☎055-860-38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의	견 >	세	き	서		
1. 자치	법 규 명								
2. 의견	성명(명	칭)				전 화	번호		
제출자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성	반대		<u> </u>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15년"을 "30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한 번에 15년씩 세 차례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15년" 을 "30년"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해군 공유재산 조례」"을 "「남해군 공유재산 조례」"로 한다.

별표2는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15년) 부과된 관리비에 대해서는 두 번째(기간연장 15년 1회) 부과까지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수탁협약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2]

#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6조 제1항 관련)

### 1. 매장묘역 및 봉안시설 등

구	구 분		금액(원)	비고
	사용료		860,000/60년	최초 1회 징수
매장묘역	관리비	1구당	16,000/1년	
	기간연장		30년(최초) 30년 1회	30년 단위 징수
	사용료		130,000/60년	최초 1회 징수
봉안평장	관리비	1구당	2,000/1년	
	기간연장		30년(최초) 30년 1회	30년 단위 징수
	사용료		160,000/60년	최초 1회 징수
봉안당 (안락원)	관리비	1개 안치단	8,000/1년	
(1111)	기간연장		30년(최초) 30년 1회	30년 단위 징수
	사용료		3,120,000/60년	최초 1회 징수
봉안묘	관리비	1개소	57,000/1년	
	기간연장		30년(최초) 30년 1회	30년 단위 징수

7	보 분		기 준	금액(원)	비고	
	_] フェ]	사용료		3,950,000/60년	최초 1회 징수	
	기 <del>족</del> 형 1개소	관리비	   1개소	10,000/1년	20년 단의	
	(12기형)	기간연장	17 11-1-	30년(최초) 30년 1회	30년 단위 징수 최초 1회 징수 30년 단위 징수	
	ロマシ	사용료		7,900,000/60년	최초 1회 징수	
 	문 <del>중</del> 형 1개소	관리비	   1개소	15,000/1년	2013 다이	
10616	(24기형)	기간연장	1/ 1/	30년(최초) 30년 1회		
	문중형 1개소 (48기형)	사용료		15,800,000/60년	최초 1회 징수	
		관리비	1개소	1개소	20,000/1년	2013 다이
		기간연장		30년(최초) 30년 1회	· ·	
	개인용	사용료	1구당	300,000/60년		
자연장지	가족(2구)	사용료	1개소	550,000/60년		
	기족(4구)	사용료	1개소	1,100,000/60년	관리비 없음	
	가족(6구)	사용료	1개소	1,650,000/60년		
	문중종중	사용료	1개소	안치구수로 산정		

- 비고 ① 묘지 또는 봉안된 유골의 현존지가 군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타 시군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봉안당(안락원) 사용료와 관리비는 3배로 부과한다.
  - ② 사설 봉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시로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석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장사시설 사용자가 부담한다.

#### 2. 화장시설 및 장례식장

7.11	, 11 0	カレス	사용료	нја	
구분	분 내용 기준 _		남해군민	남해군민외	비고
	대인 (만15세 이상)	1구당	60,000	300,000	
	소인 (만15세 미만)	1구당	40,000	200,000	
화장	사산아	1구당	30,000	150,000	
시설	개장유골 그 밖의 적출물	1구당 15kg미만	30,000	150,000	
		1구당 15kg이상	50,000	250,000	
		kg	2,000	_	
장례 식장	영결식장 (1시간기준)	1실당	_	60,000	
	빈소및접객실 (1시간기준)	1실당	9,500	20,000	
	안치실 (1시간기준)	1구당	5,000	100,000	
	염습실	1회당	30,000	60,000	

- 1. 남해군민이란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해군인 사람을 말한다.
- 2. 빈소 및 접객실, 안치실의 사용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공정 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기간은 <u>3년</u> 이내로 하며, 수탁자	3—_52
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	
신할 수 있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매장묘역 등의 사용기간) ① 매장	제15조(매장묘역 등의 사용기간) ①
묘역 등의 사용기간은 <u>15년</u> 으로 한다.	<u></u>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매장	2——
묘역 등의 연고자가 군수에게 사용기간	
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u>한 번에</u>	<u></u>
15년씩 세 차례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한하여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u>수 있다.</u>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봉안당의 사용기간) ① 봉안당의	제17조(봉안당의 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u>15년</u> 으로 한다.	<u>30년</u>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봉안	2
당의 연고자가 군수에게 사용기간의 연	
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u>한번에 15년씩</u>	<u>1</u> ইপা ট্টাব
3회에 한정하여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있다.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	제24조(준용) ————
항은 <u>「장사 등에 관한 법률」,</u> 「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 「남해군 공유재	
<u>산 조례」</u> 를 준용 한다.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 <u>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u>,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 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6 - 598호

#### 도선(조도호)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남해군 미조면 미조~조도~호도간 운항중인 도선(조도호)의 선체 및 승객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도호 선내 CCTV 설치를 위하여 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 남 해 군 수

-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도선(조도호)내 CCTV 설치
  - 사업규모 : CCTV 8대 신규 설치
  - 설치사유 : 선체 및 승객안전관리
-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3. 설치장소 : 남해군 미조면 미조/ 도선(조도호)내

연번	시설명	위 치	설치대수	비고
1	도선(조도호)	조도호 선체 내・외부	8	신규 설치

- 4. 촬영범위 및 시간 : 조도호 내·외부 연중 24시간
-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7. 28.(금). ~ 8. 17.(수) (21일간)
- 6. 행정예고(공고) 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7. 의견서 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 2016. 8. 17.(수) 도착분까지
    -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나.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조도호 선내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860-3708)
  - 라. 보내실 곳 : 우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마. 문의 및 안내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442)

붙임 의견제출서 1부.

## [붙임 1] 의견제출서

	9	µ 견 제 출 Æ	भे
행정예고명	도선(조도호)나	내 CCTV 설치	
의 견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제출자	주 소		
설치위치		의견제출 '	내용
도선(조도호) 내.외부			

도선(조도호)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16 - 605호

#### 남해군 주차장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주차장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주차장 조례
- 2. 개정이유

개정된 상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세부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주차장법은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차장법개정으로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규정함.
  - 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개정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일반입찰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된 수의계약 등 수탁자선정조항을 삭제하고 일반입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라.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 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

- 마.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중 종교시설, 운수시설, 장례식장,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에 관한 세부설치 기준을 규 정하고자 함.
-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5.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겨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전화: 055-860-3453, FAX: 055-860-370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 견 제 출 서					
1. 자치	법 규 명					
2. 의견	성명(명칭)				전 화 번 호	
제출자	주 소					
   자치법-	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 , ,		찬성	반대		,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주차요금 정수 등) ① 주차는 1회 주차 및 월 정기주차로 구분하며, 주차 요금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한다.
  - ② 주차요금은 주차표의 회수와 동시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 사전계약과 동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차표를 구입하여야 한다.
  - ③ 주차시에는 주차예정시간을 확인한 후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17:00 이후 주차차량은 주차요금을 선납하게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3(주차료 면제 및 감면) 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1. 주차장(주차구획선)과 연접한 점포주의 영업상 상품을 싣거나 내리는 등의 행위로 인한 차량의 일시적 정차시
  - 2. 군 단위 이상의 행사를 하는 경우(사전 고시지역)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주차요금 경감대상 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군단위 이상의 행사를 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
  - 2.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수상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

- 3. 이장이 공무로 군청을 방문하여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단, 공무수행 부서장이 발행한 방문확인서(별지서식)을 제출한 차량에 한정한다.
-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이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애인을 동반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장애인 자동차 표지(스티커)부착 차량에 한한다.
- 5.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 7. 군수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한 자동차 부제 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은 주차 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부제 참여 자동차표지(스티커) 부착 자동차에 한정한다.
- 8.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2,000원까지 감면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을 갖춘 자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군에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군에 사전납부하고 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수탁자의 관리수탁금 납부방법은 1개월 단위로 분납하되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15일 미만이 되는 때의 납입금은 그 다음 납부월에 합산 납부토록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 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해군 주차장조례 제16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5]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6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	
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8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
	{(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 위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는 영 제6조제	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서식] (제5조의3 관련)

확 인 서

1. 방 문 일 시 : 년 월 일

2. 방문차량번호 :

3. 방문시간 : 시간

4. 방문기관(부서) :

5. 방문목적 :

6. 방 문 자 : 남해군 (읍)면 리장

확인자 : 실과소장(인)

## 신 • 구조문대비표

-1 -9	n -2 .2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주차	<삭 제>
요금 경감대상 자동차 및 그 비율은 규칙	
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신 설>	제5조의2(주차요금 징수 등) ① 주차는 1
	회 주차 및 월 정기주차로 구분하며, 주차
	요금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공영주
	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한다.
	하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단, 월 정
	기주차의 경우 사전계약과 동시 주차요금
	을 지불하고 주차표를 구입하여야 한다.
	③ 주차시에는 주차예정시간을 확인한 후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
	며, 17:00 이후 주차차량은 주차요금을 선
	납하게 한다.
<신 설>	제5조의3(주차료 면제 및 감면) ① 주차장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주차장(주차구획선)과 연접한 점포주의
	영업상 상품을 싣거나 내리는 등의 행위로
	인한 차량의 일시적 정차시
	2. 군 단위 이상의 행사를 하는 경우(사전
	고시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경우</u>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주차

- <u>요금 경감대상 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u>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군단위 이상의 행사를 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도록 지정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 한다.
- 2.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수상 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 면한다.
- 3. 이장이 공무로 군청을 방문하여 공영유 료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 퍼센트를 감면한다. 단, 공무수행 부서장 이 발행한 방문확인서(별지서식)을 제출한 차량에 한정한다.
-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이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애인을 동반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장애인 자동차 표지(스티커)부착 차량에 한한다.
- 5.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조제2항의 별표 1에 따른 경형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 다.
-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 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퍼센트를 경감한다.
- 7. 군수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한 자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 ① (생략)
- 1. (생략)
-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3.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관리협약에 따른 방법과 금액
- 2. 제1항제2호, 제3호의 경우 관리수탁자 의 선정은 경쟁계약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 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의계약 또는 위탁관리협약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신 설>

제9조(관리수탁금 금액 및 납부방법) ① 제9조 <삭 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관리수탁금"이

동차 부제 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은 주차요 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부제 참 여 자동차표지(스티커) 부착 자동차에 한 정한다.

8.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 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 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은 2,000원까지 감면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 ①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을 갖춘 자
  - 3. (현행과 같음)
-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군에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위탁 |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 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 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 우에는 낙찰금액을 군에 사전납부하고 위탁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관리수탁자의 관리수탁금 납부방법은 1 개월 단위로 분납하되 매월 말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15일 미만 이 되는 때의 납입금은 그 다음 납부월에 합산 납부토록 한다.

라 한다)의 산출은 도로점용료, 사유재산 대부료, 주차장 이용율 등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관리수탁금은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군 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③ 관리수탁자의 관리수탁금 납부방법은 1 개월 단위로 분납하되 매월 말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15일 미 만이 되는 때의 납입금은 그 다음 납부월 에 합산 납부토록 한다.

<신 설>

제21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 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상 경과)하여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해군 주차장조례 제16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경	병안 r	
시 설 물 설치기준		시 설 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m <sup>2</sup> 당 1대 (시설면적 /100m <sup>2</sup>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 시설면적 150m*당 1대 (시설면적 /150m)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u>종교시설</u> ,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u>방송통신시설</u> 중 방송국, <u>장례식장</u>	(현행과 같음)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 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 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 설	○ 시설면적 200m'당 1대(시설면적 /200m)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 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 한다)은 제외한다1, 제2종 근린생활시 설, 숙박시설	(현행과 같음)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80m' 초과 150m'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m' 초과: 1대에 150 m'를 초과하는 100m'당 1대를 더한 대 수[1+{(시설면적-150m')/100m'}]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 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 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 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 람장	<ul> <li>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li> <li>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li> <li>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정 원/15인)</li> <li>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li> </ul>	(현행과 같음)	<ul> <li>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li> <li>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li> <li>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li> <li>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li> </ul>	
< 신 설 >	< 신 설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m <sup>*</sup> 당 1대(시설면적 /350m <sup>*</sup> )	
< 신 설 >	< 신 설 >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m <sup>*</sup> 당 1대(시설면적 /400m <sup>*</sup> )	
< 신 설 >	< 신 설 >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m'당 1대(시설면적 /400m')	
7.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m'당 1대(시설면적 /300m')	10. 그 밖의 건축물	(현행과 같음)	

〈관련 법령〉

#### 주차장법

-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

<신설 2016.1.19.>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개정 2016. 7.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u> </u>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m²당 1대(시설면적/100m²)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 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 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 설, 숙박시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 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 -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ul> <li>○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li> <li>○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li> <li>○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li> <li>○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li> </ul>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m²당 1대(시설면적/350m²)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 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0<개정 2013.3.23.>

-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 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혐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6 - 606호

#### 남해군 주차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주차장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1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2. 개정이유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그밖에 시행규칙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주차장법에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차장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 다. 위탁관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
-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5.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h. 의견제출할 곳 : 우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전화 : 055-860-3453, FAX : 055-860-3708) h.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1. ન신세널 8日·시닌, 전화, PAA, 한 급해기시, 독日 8년 8

의 견 제 출 서							
1. 자치	법 규 명						
2. 의견 성명(명칭)					전화번호		
제출자	주 소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 リ/ リ 日	II & 910	찬성	반대		7	<u>ئ</u>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규칙 제 호

## 남해군 주차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주차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제18조 중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별지서식을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주차는 1회 주차 및 월 정기주차로 구분하며, 주차 요 금은 조례 제3조 제4항에 규정한 공영주차 장 주차요금표에 의한다. ② 주차요금은 주차표의 회수와 동시 징수 하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단, 월 정 기주차의 경우 사전계약과 동시 주차요금 을 지불하고 주차표를 구입하여야 한다. ③ 주차시에는 주차예정시간을 확인한 후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 며, 17:00 이후 주차차량은 주차요금을 선 납하게 한다.	제9조 <삭 제>
제10조(주차료 면제 및 감면) ① 주차 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주차장(주차구획선)과 연접한 점포주의 영업상 상품을 싣거나 내리는 등의 행위로인한 차량의 일시적 정차시 2. 군 단위 이상의 행사를 하는 경우(사전고시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주차요금 경감대상 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단위 이상의 행사를 하는 경우로서	제10조 <삭 제>

군수가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도록 지정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 한다.

- 2.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수상 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 다.
- 3. 이장이 공무로 군청을 방문하여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단, 공무수행 부서장이 발행한 방문확인서(별지서식)을 제출한차량에 한정한다.
-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이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애인을 동반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장애인 자동차 표지(스티커)부착 차량에 한한다.
- 5.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6. 군수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한 자동차 부제 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부제 참여 자동차표지(스티커) 부착 자동차에 한정한다.
- 7.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 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 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은 2,000원까지 감면한다

제16조(계약기간) 조례 <u>제6조</u>에\_따른 공영 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은 위탁한 날부터 <u>1년</u>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해제) 군수는 조례 <u>제6조</u>에 따른 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수탁관리 기간의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있다.

#### 1.~4. (생략)

제18조(계약금 등) ① 수탁자는 조례 <u>제6</u> <u>조에</u> 따른 계약금을 1개월 단위로 하되 매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7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일로 부터 15일 미만이 되는 때에는 납입일을 그다음 납부월에 합산 납부토록 한다)

② ~ ③ 생략

제16조(계약기간) <u>제8조</u>
3 <u>-</u>
· 제17조(계약의 해제) <u>제8조</u>
 1.~4. (현행과 같음)
제18조(계약금 등) ① <u>제8조</u>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남해군 공고 제2016 - 607호

##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1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자치법규인 조례에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서장의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규율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나. 개정된 상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
- 3. 주요내용

가. 제2조, 제3조, 제4조 "경찰서장" 삭제 및 상위 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변경 나. 제5조 상위 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

-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5.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전화 : 055-860-3453, FAX : 055-860-3708)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 화 번 호			
	주 소			1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성	반대		'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31조의2"는 "제36조"로 하고,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군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1조의2제1항"은 "제15조제3항"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1조의2제2항 "을 "제15조제2항 "으로 하고,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군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3조의5 제1항제2호"를 "제2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군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1조제1항"은 "제36조"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조 및 동법 제31조의2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남해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u>제36</u> 조 <u>구</u> 수는
제3조(소요비용) ① 영 <u>제11조의 2 제1항</u> 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 표와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u>제15조제3항</u> 
② 영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 <u>제15조제2항</u> —— 군수는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13조의 5 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제23조제1항제2호의
② <u>경찰서장 또는 군수는</u> 대행법인용외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元十二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u>제36조</u> 에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 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외에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남해군 공고 제2016 - 613호

# 군관리계획(체육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341번지 일원에 남해군 고시 제2015-969호(2015.12.18)로 준공된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체육시설: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88조·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계 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34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남해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 명 칭 :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1.331.102.0m²
  - 규 모 : 체육시설 320.644.0㎡, 건축시설 35.116.0㎡, 공공시설 109.095.5㎡, 녹지시설 866.246.5㎡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한 섬 피 앤 디 대표이사 강 수, 정 진

(주)사우스케이프 대표이사 강 ○ 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16년 07월

○ 준공예정일 : 2017년 07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

7.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장 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9. 기타 의견이 있는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 055-860-341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ادريما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합계			1,331,102.0	1,331,102.0						
1	진동리	1334	임	498.6	498.6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	진동리	1335	임	80.1	80.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	진동리	1336	임	174.5	174.5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	진동리	1337	임	4,047.8	4,047.8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34116 /32265
						정○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			지분34116 /1851
5	진동리	1338	체	15,424.0	15,424.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6	진동리	1339	임	1,058.0	1,058.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7	진동리	1340	임	14,163.0	14,163.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8	진동리	1341	임	10,829.0	10,829.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9	진동리	1342	임	18,306.1	18,306.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0	진동리	1343	임	646.9	646.9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1	진동리	1344	임	3,956.2	3,956.2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2/1
						정○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			지분2/1
12	진동리	1345	임	60,964.6	60,964.6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3	진동리	1346	체	390,568.3	390,568.3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4	진동리	1347	임	22,958.1	22,958.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34116 /32265
						정○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			지분34116 /1851
15	진동리	1348	임	3,587.5	3,587.5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6	진동리	1349	임	38.9	38.9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7	진동리	1350	임	5,125.9	5,125.9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8	진동리	1351	체	10,710.4	10,710.4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9	진동리	1352	체	11,668.0	11,668.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0	진동리	1353	임	97,159.8	97,159.8	한섬피앤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6-5 경상남도 남해군			
21	진동리	1354	체	22,766.5	22,766.5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창선면 진동리 산321			
22	진동리	1355	체	6,124.6	6,124.6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3	진동리	1356	임	21,847.1	21,847.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4	진동리	1357	체	249,388.1	249,388.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5	진동리	1358	임	12,159.1	12,159.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22 ====
26	진동리	1359	임	2,553.5	2,553.5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2789 /2322
						정○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지분2789 /467
27	진동리	1360	임	11,756.3	11,756.3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8	진동리	1361	체	85,423.5	85,423.5	한섬피앤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6-5			

	소재지	지번		면적(m')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29	진동리	1362	임	10,172.9	10,172.9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0	진동리	1363	임	9,315.8	9,315.8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1	진동리	1364	임	9,615.3	9,615.3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2	진동리	1365	임	3,484.5	3,484.5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3	진동리	1366	임	13,132.2	13,132.2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4	진동리	1367	임	857.2	857.2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5	진동리	1368	임	2,810.7	2,810.7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6	진동리	1369	임	1,698.6	1,698.6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7	진동리	1370	체	70,707.1	70,707.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8	진동리	1371	임	33,925.7	33,925.7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3468 /34361
						정○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			지분3468 /322
39	진동리	1372	체	6,636.1	6,636.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
40	진동리	1373	임	3,059.2	3,059.2	한섬피앤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6-5			지분215 /10764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215 /10825
41	진동리	1374	임	38,211.0	38,211.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 = = = =
42	진동리	1375	임	8,038.5	8,038.5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3	진동리	1376	도	8,056.9	8,056.9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4	진동리	1377	도	544.0	544.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5	진동리	1378	도	229.5	229.5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346 /34361
						정○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지분346 /34361
46	진동리	1379	도	122.2	122.2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3468 /3436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지분3468 /322
47	진동리	1380	도	409.1	409.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
48	진동리	1381	도	384.3	384.3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9	진동리	1382	도	18,473.9	18,473.9	한섬피앤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6-5			지분215 /10764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2158 /10825
50	진동리	1383	도	2,489.6	2,489.6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617 /1999
						정○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지분617 /4177
51	진동리	1384	도	4,224.7	4,224.7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 1111
52	진동리	1385	도	518.6	518.6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2/1
						한섬피앤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6-5			지분2/1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 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8조의4"로 한다. 제5조 중 "폐기물에 대하여는"을 "폐기물은"으로 한다.

제11조는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중 "20%이상"을 "2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월 1회"를 "한 차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을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사업개시일 10일 전"을 "사업개시 이후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는"을 "자에게는"으로,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20조제4항은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2. <생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 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 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1. ~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 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1조 <삭 제>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②(생략) ③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공동주택 등의 운영주체가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이행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0%이상 감량한 경우 월 1회의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부필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②(현행과 같음) ③ ———————————————————————————————————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u>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u> <u>하여금</u>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u>사</u>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1

업 :	개시일	10일전	에 군	'수에기	· 세 신.	고하여	여
٥ţ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	필증-	으
亚	부하여여	야 한다.					

-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 군수는 제9조,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준수사 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 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 ② < 삭 제 >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 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 생략 >

④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 | ④ <삭 제> 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 방세기본법」을 따른다.

<u> 개시 이후30일 이내에</u>
<del></del>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
<u></u> 부과한다 <u>.</u>

- ③ <현행과 같음>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 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8조의4"로 한다. 제5조 중 "폐기물에 대하여는"을 "폐기물은"으로 한다.

제11조는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중 "20%이상"을 "2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월 1회"를 "한 차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을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사업개시일 10일 전"을 "사업개시 이후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는"을 "자에게는"으로,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20조제4항은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2. <생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 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 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 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 2. <현행과 같음> 3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 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1조 <삭 제>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②(생략) ③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공동주 택 등의 운영주체가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0%이상 감량한 경우 월 1회의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부필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u>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u> <u>하여금</u>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 <del>조</del> ①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u>에게</u>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u>사</u>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1

<u>업</u>	<u> 개시일</u>	<u>10일전</u>	.에 군	'수에거	ll 신고히	-여
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	들을
亚马	부하여여	야 한다.				

-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 군수는 제9조,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준수사 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 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② < 삭 제 > 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 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 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 생략 >

④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④ <삭 제>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 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 고는「지방세기본법」을 따른다.

<u>ک</u>	시 이후30일 이내에	
_		
제2	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	
_		
_		
-		<u> 부과한다.</u>

- ③ <현행과 같음>

남해군 공고 제2016 - 615호

#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지방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제2조제3호)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에 관한 내용 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부분 수정
- 나. (제11조) 규정 삭제
- 다. (제17조제1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 신고서 제출기한 부분 수정
- 라. (제20조) 과태료 부과 · 징수 규정 삭제 및 수정
-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4.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兜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264, 팩스 860-3707, e-mail : sujino76@korea.kr

의 견 제 출 서							
1. 자치	법 규 명						
2. 의견	성명(명칭)		전 화 번 호				
제출자	주 소						
   자치법 <sup>-</sup>	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 년 8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 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8조의4"로 한다. 제5조 중 "폐기물에 대하여는"을 "폐기물은"으로 한다.

제11조는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중 "20%이상"을 "2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월 1회"를 "한 차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을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사업개시일 10일 전"을 "사업개시 이후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는"을 "자에게는"으로,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20조제4항은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2. <생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 2. <현행과 같음> 3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 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1조 <삭 제>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②(생략) ③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공동주 택 등의 운영주체가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 하여 20%이상 감량한 경우 월 1회의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부필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u>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u> <u>하여금</u>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① <u>폐기물 재활용신고자에게</u>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1

포함된	감량의	무이	행계획	신.	고서를	<u>사</u>	<u>업</u>
개시일	10일	전에	군수에	게	신고히	여	야
하며, 급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	2필증을	을	亚
부하여여	야 하디	-					

-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 군수는 제9조,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 니한 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② < 삭 제 > 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 생략 >

④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④ <삭 제>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 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는「지방세기본법」을 따른다.

	<u> 사압사시</u>
이후30일 이내에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	
——————————————————————————————————————	

- ③ <현행과 같음>

남해군 공고 제2016 - 616호

#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가.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 나.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2. 개정이유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신고의무로 부당한 규제 및 규정 정비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
    - 1)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조문 개정(안 제2조)
    - 2) 사용개시 등의 신고 삭제(안 제3조)
    - 3)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삭제(안 제6조제1항)
    - 4)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식에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허용에 따라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서식)
    - 5)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용어 정비
  - 나. 「남해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1) 신고 삭제(안 제10조)

- 2) 준공검사 삭제(안 제12조)
- 3) 신고삭제에 따른 별지 서식 삭제(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 4) 준공검사삭제에 따른 별지 서식 삭제(별지 제10호 서식)

#### 4.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 1) 주소 : ⑤52413,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남해군청 상하수도사업소
- 2) 연락처 : 전화055-860-3333, 팩스860-3751, e-mail : ckjaya@korea.kr

	의 견 제 출 서										
1. 자치	법 규 명										
2. 의견	성명(명칭)			전 화 번 호							
제출자	주 소										
자치번-	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71711	11 6 -110	찬성	반대	- 1	Ľ.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6조제1항를 삭제한다.

제8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해당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로 하다.

제17조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혂 행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 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 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 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하 여야 한다.

####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하수도사용 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 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 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 고자 할 때
-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 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급수사 용개시신고
- 2.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 3.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개 발・이용의 신고

#### 개 정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 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 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 터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u>하수관거</u> 준설 등) ① 군수는 <u>하수관거</u> 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u>하수관거</u>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u>하수관거</u> 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한 차례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u>하수관로</u> <u>하수관로</u> ② <u>하수관로</u>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u>하수관거</u>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 ④ 생략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안

#### 현 행

#### [별지 제1호서식]

	근기	., _		, -	•						
Г			배수	설비	· 준공	당검	사 신	l청서			
	법 인	. 명									
설 치	성명(대	[표자]							년 일		
자	주	소						전 번	화 호		
	법 인	명							. 1		
시 공 자	성명(대	표자)						등	민 록 호		
	주	소						전 번	화 호		
	설치	목적	생활. 배제	오수,	산업	폐수	÷, š	·산폐=	È,	기타(	)
배	설치의	위치	경상	남도 '	남해균	<u>.</u>	읍	(면)		리	번지
수 설	관	종	P	VC관,	PE		흄관, ^철관	, 기타	Ŧ <u></u>		관,
비 현	관	경	ø	mm	연장		m	방법		관,맨홀,타 기타)에 접	속
황	배출~	수량		m³/	일	*	는 법	수질 및 를 제33	! 수성 3조에	정된 하수배 생태계 보전 <sup>6</sup> 의하여 허 을 기입함	게 관하
		검	사	항	목			1차 검사 검사 일지	<u>}</u> } 보 } } 사		Н п
준 공	(누수, 훼손	설비 연,지하수침 여부, 훼·	투여부, 손시 적	공공ㅎ 정복구	ト수도· 여부)	타배=	<b>수설비</b>	. ;			
		설비 경 설비 관				^8')		+			
검			. 성의 수  질(내구	, , ,		선)		+			
		,우수 분				0)		+			
사	6. 공공	하수도,	타배수	설비오	<del>부</del> 의 9	2접	<b>卢</b> 부				
	7. 기타 규	· 상기 · 칙 별표	신고사학 의 기준	당 및 - 준수	하수. 구여부	도법	시행				
			검 시		<u> </u>						
	※ 검/	사자는 건 해야 할	]사란에 사항	각 항 및 재	목에 I 검사 일	대한 일자를	합격여 · 명기	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
	하수도법 를 신청한 또는 인) <b>남해군</b>	합니다.		규정 년		하여 월	위와 일	같이 신청인		설비 준공 (	검사 서명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개정[별지 제1호서식]

_												
			배=	수설비	준	당검人	· 신	청서				
	법	인 명										
설 치	성명(	대표자)						생1 월9	년 일			
자	주	소						전 번	화 호			
П	법	인 명										
시 공 자	성명(	대표자)						해건업 및 등번	설종-:-록			
Ш	주	소						전 번	화 호			
	설치	1목적	생활 배제	오수,	산입	네페수,	축	산폐수	<del>-</del> ,	기타(		)
배	설치	]위치	경상	남도 '	남해균	L -	읍	(면)		리		번지
수 설	관	종	F	VC관,	PE	관, 휠 주	F관, 철관,	VR관 기타		PC관,	강관	<del>1</del> ,
비 현	관	경	ø	mm	연장		m	접속 ( 방법	하수	관,맨홀, 기타)에		
황	배출	·수량		m³/	일	<b>※</b> ⊼	는 법률	에 의하여 수질 및 는 제33:  설의 폐	수실 조에	방태계 보 의하여	전에 허가	관한
준		검	사	항	목			1차 검사 검사 일자 ( .	보: 사 <sup>†</sup>		일자	비고
공	(누=	수설비 연 수,지하수침 손여부, 훼	투여부	- 공공ㅎ	ŀ수도·		설비					
$ $ $ $		수설비 경	. ,			상)						
검		수설비 관										
		수설비 자	_ `			성)		+				
<b>I</b> .,		수,우수 년 공하수도,				7 7 4	н					
사	7 7]1	<u>~ 아구도,</u> 타 상기 규칙 별표	시고사	하 민	하수	도번 /						
$  \cdot  $				セーエコ				+	<u> </u>			
	* 7	심사자는 검 해야 할	나라에	<u>'</u>   각 항	목에 1	대한 합 일자를	·격여 명기	부를 〇	,×로	표시하	고 보	L완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 료 **남해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
	2. 배수설비 준	공도				豆
	(배수설비외	- 공공하수	·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없음
1/200~1	/500 도면)					음

남해군 규칙 제 호

# 남해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0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혀 행 개 정 안

- 제10조(신고)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개시 제10조(신고) 삭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다.
  -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 2. 지하수, 하천수, 해수, 그 밖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 4. 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 ② 지하수, 하천수, 해수, 그 밖에 사용신고 와 사용량과 배출야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 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 트가공업 등의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차이가 있을 때에 한한다.
- 제12조(점용허가 신청) ① 생략
  -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 ② 삭제 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0 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 ③ 생략

제12조(젂용허가 신청) ① 생략

- ③ 생략

		현	행					개	정	안	
1	제4호서식]						삭제				
링	공하수도시	용(개시·중) 서	디메기	IN용)(I	<u> </u>	처리기간					
		서				7일					
	하수번호			생년월일							
} }	주 소			상 호							
	성 명		업 태		전화번	ō					
	사 용 수	지하수	) 하천수	기타(		)					
	배 출 량	생활하수	m¹/일	사업장 폐수		m³/일					
	급수실태	사용인구	명	연 건 평		m²					
		자동모타	펌프		7]	타					
2		모타규격	НР	설치 대수		대					
H	양수시설	설치대수	대	구경		m/m					
3-		관 구 경	m/m	양수 능력		m¹/h					
		양수능력	m³/h	기타							
	수전번호	업 종	월평균사	용량(m³)	Ę	기사항					
ਜੋ		도사용조례 제4조 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제10조제	1항제1호의					
님	<b>†해군수</b> 귀하		신청약	<u>)</u>	(인)						

		현	행				フ	개 정	안	
5호	서식]					삭제				
	지하수등 으	사용량 신고	l서 (	윌)	처리기간 즉시					
	하수번호			생년 월일						
사 용 자	주 소			상호						
	성 명		업 태		전화 번호					
		자동모티	펌프	ر ( م	기 타 수동펌프 물유수연수)					
		모타규격	HP	설치 개소 수	대					
	양수시설	설치대수	대	구경	m/m					
신		관 구 경	m/m	양수 능력	m³/h					
고   내		양수능력	m³/h	기타						
8	용 도									
	사용기간	년 월 역	일 ~ 년	월	일 ( 일간)					
	사용량	일간	m³	월	<u>라</u> m³					
	비 고									
		-도사용조례 제 .의 규정에 따리 년 월	<b>나서 위와</b> 4	같이 신						

			현	행		
)	제6호서식]					
	사용량과	배축	량이	차이 신고	ᄖ	처리기간
	W80H	411 <b>2</b>	0-1	7101 CI		즉 시
	하수번호			생년월일		
사 용 자	주 소				상 호	
`!	성 명		업태		전화번호	
	제 품 명	단위	월간생 산량 (m')	불합유량(m³) (비율%)	물사용량 (m³)	기 타 감수량(m³)
			()			
감 수						
당						
	용수총량(㎡)	감 (	수량 m³)	·수배출량(m³)	사 용	· 기 간
하수도사용					년 월 년 월	일 ~ 일 ( 일간)
용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일간)
1	남해군 하수 항제3호의 규정			전 및 같은 조리 같이 신고합니		제10조제
			년	월 일		
				신청인		(인)
ŀ	<b>남해군수</b> 귀하					
<첨	부서류> : 1. 입	증서류				

		현 행				개	정	안	
제!	7호서식]			처리기간	삭제				
	광광아수노시	l용 양태 변경 <i>(</i>	신고서	3일					
	하수번호		생년월일						
사 용 자	주 소		상 호						
	성명	업 태		전화 번호					
	현 행	,							
샹	변 경								
태 별	변경사유								
	변경일자								
č	남해군 하수도사용 황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구조례 제6조 및 같은 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 년 월 일		제10조제1					
۲	<b>남해군수</b> 귀하	신청인	,	(인)					
<	·첨부서류> :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 법규 1	부.						

		ॡ	! 행			
	<sup>10호서식]</sup> 당하수도	덕용공작 청 <i>人</i>	물설치준 1	공검사	신 _	h리기간 10일
신	주소			상 호		I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설치 목적					
	설치 장소 고시					
H	공사 실시 방법					
8	공사 내용 ( 구 조 )					
マスフス	추 공 구 근 근 공 공 구 구 공 공 공 공 공					
			-조례 제9조 ·정에 따라/ 월 일 신청	러 위와 점		
	<b>해군수</b> 구		1 년			
<1	설무서뉴> ]		1부. 준공도서 1	부.		

남해군 공고 제2016 - 624호

## 공시송달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금송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금송소하천 정비공사

나.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다. 사업장위치 :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930-1번지 일원

2. 공고기간 : 2016. 08. 08 ~ 2016. 08. 23(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나. 협의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 위 협의기간 중 미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마. 구비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통장사본 1부, 인감도장.

#### 5. 공시송달 대상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m²)	주 소(등기부)	성 명	권리자외 관계인	비고
					ナ 또(8기구)	· · · · · · · · · · · · · · · · · · ·	(상속자)	
							(미*리)	
							(이*우)	
					나레그 사드러	ᄭᅎᅄ	(이*엽)	
1		930-1	답	126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1	이종업 (사망자)	(이*선)	
					ㅁ당니 ^^^^	(///6////	(이*향)	
	남해군						(이*순)	
	삼동면						(이*선)	
	금송리						(김*호)	
							(김*기)	
2		000 1	- - 답	40	남해군 삼동면	김용배	(김*곤)	
		933-1		40	금송리 ****	(사망자)	(김*원)	
							(김*희)	
							(김*희)	

#### 6. 기타사항 및 문의처

- 가.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 으로 갈음합니다.
-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55-860-32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6 - 628호

#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포기 신고수리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포기 신고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 남 해 군 수

#### ○ 양식어업면허 처분

머쉬버츳	어업의종류	어장	면허 면적	면허기간	어 업 권	자	nj –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어장 위치	日平 (m²)	번에기간	주 소	성 명	비고
남해양식 제450호	패류양식 (바닥식)	창선 서대	50,000	2016. 8. 8. 2026. 8. 7. (10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	정○현	대체개발 (어장이설)

#### ○ 양식어업권 포기신고 수리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²)	면허기간	어 업 권 자		ul-
						주 소	성 명	비고
남해양식 제386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서면 서상	1 1 ( )( ) ( )( )	2012.11.21 2022.11.20 (10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	정○현	대체개발 (어장이설)

남해군 공고 제2016 - 630호

## 공시송달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 남 해 군 수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다. 사업장위치 :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일원

2. 공고기간 : 2016. 08. 10 ~ 2016. 08. 25(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4. 보상계획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나. 협의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 위 협의기간 중 미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마.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통장사본 1부, 인감도장.

#### 5. 공시송달 대상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주 소(등기부)	성 명	권리자외관계 인 (상속자)	비고
1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46-1	답	36	미등기	이태순 (사망자)	(이*길)	수취인 불명
2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81-3	답	190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	김재현 (사망자)	(김*근)	수취인 불명
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85	답	43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	김재연 (사망자)	(김*산)	수취인 불명
4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342-4	대	59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	이학이 (사망자)	_	수취인 불명
5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376	천	522	미등기	송상조 (사망자)	(송*수)	수취인 불명
6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415-2	임	24	미등기	김재신 (사망자)	(김*용)	수취인 불명
7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360-1	답	75.8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	김부한 (사망자)	(김*정)	수취인 불명

#### 6. 기타사항 및 문의처

- 가.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55-860-3294)으로 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 림

남해군보건소 공고 제2016 - 16호

#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2. 제정이유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코자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보 완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보조금의 지원 (안 제6조의1)
    - 국•도비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
-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3/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북변리 458-2) 남해군 보건소(전화 055-860-8732, 팩스 055-860-8799)
-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그 밖에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보건소 예방의약팀(860-8732)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1. 자치	법규명	「남해균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 의견	성명(명칭)				전화번호		
제출자	주 소						
자치법 <sup>-</sup>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보조금의 지원)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국 T 도비 지원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6조(수탁자의 의무) <생 략>	제6조(수탁자의 의무)<현행과 같음>
<신 설 >	제6조의1(보조금의 지원)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국 도비 지원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이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남해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령」,「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관계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 3.>

[시행일: 2016. 8. 4] 제3조

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항 또는 제 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 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

[시행일: 2016. 8. 4]제7조

남해군보건소 공고 제2016 - 17호

## 남해군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 제정이유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능 및 역할 등을 정함(안 제1조~제3조)
    -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설명, 기능 및 역할
  - 나.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범위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시설의 지원
  - 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6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시설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 관리자 교육 및 홍보
  - 라.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환자의 인권보호, 보조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마. 지도 및 감독, 재정지원의 취소, 회계 및 결산 등(안 제8조~ 제10조)

###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3/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북변리 458-2) 남해군 보건소(전화 055-860-8732, 팩스 055-860-8799)
-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그 밖에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보건소 예방의약팀(860-87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의	견 /	쉐	출	入	}		
1. 자치	법 규 명	「남해급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 의견	성명(명칭)		전 화 번 호						
제출자	주 소								
자치법-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성	반대		'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 2. "응급의료" 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 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 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
-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 5. "자동심장충격기" 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AED) 등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 제3조(기능 및 역할 등) 군수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응급장비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홍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①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 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
-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홍보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47조의 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설치권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 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1.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3.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 6.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거 설치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③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여 한다.
-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2. 관계법령 및 조례,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 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 할 때
  - 3.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4.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0조(회계 및 결산)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해당 연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 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 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 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 군의 경우에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1. 응급환자의 진료
  -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군 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1.3.8, 2011.8.4, 2012.2.1>
  -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4>

[본조신설 2007.12.14]

[제목개정 2012. 5. 1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 [별표 1]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

#### 1.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 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사.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 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 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6 - 1호

#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가.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2. 개정이유

법제처 규제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하고, 임차료 환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임대기간 3일 원칙 개정(안 제6조)
- 나. 임차 농업기계를 사용하다 발생한 모든사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다(안 제7조)
- 다. 삭제(안 제8조 5항)
- 라. 임차료 환불(안 제8조 2항 신설)

####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 1) 주소 : ⑤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2) 연락처 : 전화055-860-3928, 팩스860-3982, e-mail : kimwl@korea.kr

의 견 제 출 서							
1. 자치	법 규 명						
2. 의견	성명(명칭)			전 화 번 호			
제출자	주 소						
자치번-	자치법규안 내용		여 부	의	견		
71/11	11 12 910	찬성	반대	<b>9</b> 1	<u>'U</u>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5일간"을 "3일간"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를 "민법 제750조에 따른다." 로 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임차료 환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 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 1. 사용자가 농기계 출고 전에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
-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환 하는 경우
- 3. 사용자가 예정한 사용기간 보다 미리 반환하는 경우
- 4.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임차료의 환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임차료 전액
-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 사용일수를 공제한 금액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대기준) ①·② (생 략) ③ 임대기간은 <u>5일간</u> 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연장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7조(임차신청 및 임대차계약) ① ~ ③ (생 략) ④ 임차농업기계를 사용하다 발생된 모 든 사고는 <u>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u>	제6조(임대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8조(임차료) ① ~ ④ (생 략) ⑤ 임차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농업기 계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료를 환불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임차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 삭 제>  제8조의2(임차료 환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기계 출고 전에 사용신청 을 철회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농 기계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환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예정한 사용기간 보다 미리         반환하는 경우         4.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         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차료의 반환기준은

(102)   001 ==	1010 2 0 2 10 2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임차료 전액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 사용일수를 공제한 금액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6 - 2호

#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가.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농기계 부품대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주민)부담 완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용어를 정비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정비 및 기타를 "정비 및 그 밖의" 로 수정(안 제5조제2항)
- 나.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개당 3만원 이하 무상제공, 그 이상일 때는 3만원을 공제한 부품대금 징수 개정(안 제6조)

### 4.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소 : ⑤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2) 연락처 : 전화055-860-3928, 팩스860-3982, e-mail : kimwl@korea.kr

의 견 제 출 서							
1. 자치	법 규 명						
2. 의견	성명(명칭)			전	화 번 호		
제출자	주 소						
ગો કો મો <i>ં</i>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٥Ì		
시시 됩 	II 긴 네중	찬성	반대		의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비 및 기타"를 "정비 및 그 밖의"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20,000원"을 "3만원"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 ① (생 략)	제5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은 부속품교체, 정비 및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에서 농업인에게 정비교육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병행	②
실시한다.	 ① (전체고 가 이
③·④ (생 략) 제6조(부품대 및 수수료)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대당 20,000원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부품대 및 수수료)
이하일 때는 무상으로 <u>제공하고 그 이</u> 상일 때에는 <u>20,000원</u> 을 공제한 부품대 금만 구입가격으로 징수한다. 다만, 농	<u> </u>
기계 점검 및 수리비는 무료로 한다.	

남해군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16 - 7호

#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2. 개정이유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중 현실에 맞도록 조문의 신설 및 삭제 등 조례를 정비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안 제2조제9호)
  - 나.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에 따른 수영장 관련 규정 조항 삭제(안 제3조제3항, 안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3항, 안 제14조제3항)
  - 다. 남해군 인조잔디구장을 장애인, 노인, 군인이 사용시 감면(안 제13조제1항제6호)
  - 라. 군민이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스포츠파크내 야구장 사용시 전체사용료의 40%감면 함(안 제13조제5항)
  - 마. 체육시설물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토록 신설(안 제17조제3항)

### 바. 별표의 내용 중

- 1) "체육시설 사용료"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표시함.
- 2) 군민이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천연잔디구장을 1/2 사용시 전체 사용료의 1/2만 적용함.
- 3) 실내체육관 이용시 냉 · 난방시설 사용료를 신설함.

#### 4.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⑤52322,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78번길 26 남해군수(체육시설사업소장)
- 2) 팩 스: 055-860-3749
- 3) 남해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자치법규 의견달기
- 4)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팀으로 문의(전화 055-860-8662)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견 >	쉐	출 〉	4		
1. 자치	법 규	명	「남해급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의견	성명(	[명칭)	전화번:						
제출자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성	반대		,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실내체육관,"을 "실내체육관(족구장 포함),"으로, "수영장, 풋살구장"을 "풋살구장"으로,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게이트볼장, 금해정, 문화체육센터 풋살구장, 실내체육관 족구장"을 "생활체육관, 게이트볼장, 금해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경비교도대원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공설"을 "트랙이 설치된 읍·면 공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트랙이 설치된 공설운동장의 경우 군민"을 "군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료, 야외공연장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를 "사용료는 체육시설, 야외공연장, 부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지훈련에만"을 "전지훈련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6호를 "6. 남해군 인조잔디구장을 장애인, 노인, 군인이 사용하고 자 할 경우"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노인, 군인"을 "청소년, 어린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군민이 행사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파크내 야구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4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혅 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남해군이 설치한 공 --- 실내체육관(족 설운동장, 면 공설운동장(체육공원), 실내 체육관, 스포츠파크 내의 시설(천연잔디구 구장 포함), ----장, 인조잔디구장, 야구장, 수영장, 풋살구 장, 테니스장, 야외공연장 등을 말한다). ---- <u>생활체육관, 게</u>이트볼장, 공설 테니스장,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게이트볼장, 금해정, 문화체육센터 풋살구 금해정 — 장, 실내체육관 족구장 등을 말한다.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9.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 및 ----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 경비교도대원 및 사회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복무요원-----. 10. • 11. (생략) 10. • 11.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허가) ① • ② (생 략) 제3조(사용허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내수영장의 경 <삭 제> 우에는 사전허가 없이 그날 사용료를 납입 하고 사용권을 구매함으로써 사용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① |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 | <삭 제> 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 <삭 제> 서 군수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체육시설별 제9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공설 운동장은 매일 오전 6시에 개장 하여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하절기인 7월 부터 9월까지의 개장 시간은 오전 5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트랙이 설치된 공설운 동장의 경우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시 상시 개방할 수 있다.
- 2. 실내 수영장은 매일 오전 8시에 개장 하여 오후 10시에 종료한다.
  - 3. (생략)
- ② 실내 수영장의 경우 매주 월요일은 | <삭 제> 휴무일로 한다.
  - ③ (생 략)
- 용료는 체육시설 사용료, 야외공연장 사 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 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와 같다.
  - ②・③ (생략)
- ④ 전지훈련에만 체육시설 사용료를 사 후에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생략)

1.~5.(생략)

<신 설>

②(생략)

- 1.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 ③ 군수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가임여성의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다만, 임산부 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del></del>	
1. <u>트랙이 설치 된 읍·면 공설</u>	
	——.
	<u>군민</u>
	•
✓ 시· 게 ∖	

<u><삭 제></u>

3.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사용료 및 납부) ① 체육시설의 사 | 제10조(사용료 및 납부) ① 사용료는 체육 시설, 야외공연장, 부대시설 -----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전지훈련시 ----

-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현행과 같음)
  - 1.~5.(현행과 같음)
  - 6. 남해군 인조잔디구장을 장애인, 노인, 군인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 ②(현행과 같음)
  - 1. 청소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개최 하는 행사

<삭 제>

수 있다).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④ (생략)

<신 설>

⑤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 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 다.

략)

③ 스포츠파크 실내수영장의 월회원이 <삭 제>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반환의 요청이 있 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소비자 피해보 상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원상복구 등) ①・② (생 략)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군민이 행사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파크내 야구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4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 다.

⑥제1항부터 제5항-

제14조(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①・② (생 제14조(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①・② (현 행과 같음)

제17조(원상복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 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ক্ত						7 7	Į,		(11.4)
체육시설 사용료	ਪਾਂਖ						1. 체육시설 사용료	사용료				
'n		וע		ال ال	О	ПО		п	וע	- KI	요 금(부가가치세 포함)	가치세
F		H			高	토.공휴일		۲	Н		阿回	토.공휴일
KH KO	大 公 文	国们	UI	1일 1회 3시간내	300,000	350,000		사장기장	凹	1일 1회 3시간내	330,000	385,000
		340	야간조명	"	100,000	100,000		(전염산디)	야간조명	"	110,000	110,000
퍼	보 사 구 장	国的	UI	"	200,000	250,000		<mark>보조구장</mark> (천연잔디)	ĦN II		220,000	275,000
F H	F	国	υl	"	70,000	100,000		F	⊒N □I	"	77,000	110,000
의 식 쇠	는 얼마 하는 그 살 나 그 한 나 그 한 h 그 한 h 그 한 h - i h - i	<b>∀</b>	くが					上	야간조명	ii ii	33,000	33,000
	Ē	[일	인조구장	"	120,000	155,000		F I	인조구장	"	132,000	165,000
P.	上 物 十 前	양	야간조명	"	100,000	100,000		上 物 十 5	야간조명	"	110,000	110,000
光	풋살 경기장	i i i i	IN I	"	20,000	30,000		풋살 경기장	폡	"	22,000	33,000
베미	테니스장		티	1회 3시간/1명	10,000	15,000		테니스장	티	1회 3시간/1면	11,000	16,500
			개인	1회 2시간내	3,000	3,000						
人中天川コ		OH	단계	"	2,500	2,500	くサス計コ					
		IN 7 27 7	월사용(일반)	"	40,000	40,00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월사용(강습)	"	50,000	50,000						
	I		개인	"	2,500	2,500						
		T Y	단제	"	2,000	2,000						
싞	상	20 {-} []	월사용(일반)	"	30,000	30,000		く所が				
_	0		월사용(강습)	"	40,000	40,000						
	1		개인	"	2,000	2,000						
		기	단계	"	1,500	1,500						
		오랜이	월사용(일반)	"	20,000	20,000						
			월사용(강습)	"	30,000	30,000						
		사 80 패	수영투수	1引(1周巨)	000 6	2 000						

70)	· 제	56	54 ই	<u> </u>						남 	해 	군 	공		보 			2	016년	년 8월 18
	가치세 포함)	표 6. 6. 9. 9.	385,000	대 아	165,000	330,000	110,000	ᅄ	대 아	275,000	110,000						사용료의			
	요 금(부가가치세	편0 전	330,000	며마	110,000	220,000	110,000	며	며마	220,000	77,000						용시전체			
<u></u>	F K		1일 1회 3시간내	ii ii	1회/3시간	1회/3시간	"	Ī	1	1일 1회 3시간내	1일 1회 3시간내						구장을 1/2 사			
개 정	ונ	Н	回口	₩ Ш	체육경기	체육이외	냉·난방시설	파( 주0 첫	스포츠댄스장	편() 기	III.						⑥ 군민이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천연잔디구장을 1/2 사용 시 전체 사용료의 1/2만 적용한다.			
	Г	1-	高。	(천연잔디)		다목적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71.0	\  ¤		(교		사 및 체력증진· 다.	강 사용료		^
			다 전 아 메	0 Ji - - - 0			실내체육관			ا ت س آ آ آ	ㅎ알도ㅎ영 (체육공원)	①< <u>小</u> A >		3<삭제>	④(현행과 같음)	⑤<삭 제>	<ul><li>⑥ 군민이 행사</li><li>1/2만 적용한다</li></ul>	2. 야외공연장 사용료		<현행과 같음>
	ПD ОЙ	표 등 등 등 등	350,000	려마	150,000	300,000		ᅄ	뼈마	250,000	100,000	시라 최소년이	시참, 경소간근 사람을 말한다.		30퍼센트에 는 1시간					토・공휴일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 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편0 전	300,000	떙마	100,000	200,000		며마	며마	200,000	70,000			말한다.	기본료의				비고	토·공휴일 사용료는 평일 의 50%를 기산한 금액으로
	L K		1일 1회 3시간내	"	1회/3시간	1회/3시간		I	1	1일 1회 3시간내	1일 1회 3시간내	는 경우를 되어 어째	이상 12세	-받은 자를	간마다 전용 간 1시간 <sup>교</sup>	부과한다.				토·공휴을 의 50%를
현행			UI BN	ال الس	체육경기	체육이외	〈신 설〉	제 20 작	스포츠댄스장	편N 미	正品	사용하고자 하-	, 글만 나는 19% 뫔, 어린이는 7세	회원증을 교부	· 초과시간 1시 · 이때에 초과시	세(10%)는 별도			8금(평등)	100,000원
	ם ח	Н Ъ	\\$\ \\$\ \\$\			다목적경기장			71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①단체는 20명 이상이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노이라라 55체 이사이 차라 이바이오 10체 이사 64체 이천이	그런기는 10개 기술보 기타, 클런리는 12개 기술 04개 기하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어린이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③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④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전용 기본료의 30펴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정한다. 이때에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이로 보다	⑤각 시설별 사용료의 부가세(10%)는 별도 부과한다.		상 사용료	7 ~	1일 1회 (4시간 기준)
			다 산 메 작	0 0 -J U			실내체육관			년 20 대 10 개		①단체는 20년 원노이이라 65	(일소년의원 R 13세 이상 1	3월회원은 호	①사용시간을 해당하는 금 이로 보다	57 시설별	<신설>	2. 야외공연장 사용료	시설물별	스포츠파크 야외공연장

10년 8명	百 TO £	1			
개 정 안 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샥- 씨>		
33			₹ <u></u>		
	工用				
(명 (교	상 전	20,000원	30,000원 20,000원	20,000원	1명당 1,000원
	7 42	1일 1회	10명 10명 12명 12명	1일 1회	1일 1회
3. 부대시설 사용료	k}o n⊨	마이크 및 확성기	전기 및 조명 전광판	냉단방시설	샤워장